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3. 2. .

국 토 교 통 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질 1등급지 또는 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훼손 저감대책의 강구) 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는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부터 5등 급지까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지여건상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평 가 결과 1등급지 또는 2등급지 를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훼손 저감대책의 강구)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수질 1등급지 또는 2등급지</u> <u>로서 대상지역 전체에 대해</u> <u>「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u> <u>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u> <u>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수</u> <u>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u> <u>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u> <u>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u> <u>한다)</u>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